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공고 제2025-72호

2025년 제2차 상반기 신규직원 민간전담 개방형 직위(3급) 채용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유통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2025년 제2차 상반기 신규직원 민간전담 개방형 직위(3급)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내용

직군	직급	인원	업무내용[붙임1 참조]
개방형 직위 (고객소통처장)	3급	1명	○ 대국민 교육·홍보 및 언론관리 ○ 대외협력 업무 및 위기대응 소통 ○ 홍보기획 및 고객관리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동향 분석 및 대응 ○ 홍보방향 설정 및 고객만족 개선

2 근무조건

구분	내용
임용일(예정)	2025. 8. 18.(월)
근로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25. 8. 18. ~ '27. 8. 17. (24개월)
근무지	본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근무시간	전일제(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보수 및 복리후생	(보수) 연 80백만원 상당(연봉 외 수당, 성과급 별도) (복리후생) 우리원 사규(「보수규정」등)에 따라 지급

- ※ 1. (임용일) 임용일은 경력자의 경우 행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근로형태) 경영 성과가 우수한 경우 1년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음(최대 3년)
 3. (보수 및 복리후생) 경력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으로 입사 후 별도의 경력 가산 없음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분	내용	
응시 자격	• 성별, 연령, 전공 등 제한 없음(단, 기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는 자 제외) • 임용 예정일(2025. 8. 18.)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 이상 충족하는 자	
	일반	○ (박사학위) 총 경력 4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공무원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책임자	○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수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학의 부교수 이상 근무 경력자
	* 재직 중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 제외)는 응시 불가	
결격사유	• 「인사규정」제22조 해당자 및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에 따른 불합격자^[붙임2 참조]	

4

전형절차 개요

Ⅰ 서류전형	Ⅱ 면접전형	Ⅲ 임용적격여부 조회	Ⅳ 최종합격자 결정
합격배수 : 5배수 이내	합격배수 : 3배수 이내	적격자	합격배수 : 1배수
- 입사지원서(적·부) - 자기소개서(100점)	(1차) PT 면접(40점) (2차) 직무 면접(60점)	- 비위면직자, 결격사유 조회 - 채용신체검사	면접합격자 중 임용적격여부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채용상담 안내]

- 일시 : 연중 상시운영
- 방법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접속
- 내용 : 2025 축산물품질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전반 Q&A 답변
- 경로 : 카카오톡 실행 → 하단 카테고리 중 오픈채팅 클릭 → 우측 상단 '검색' →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정보 공유방' 검색 후 채팅방 입장(실명 입장 必)

5

전형절차 세부사항

전형	평가기준 및 배점	선발배수	합격자 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	- 입사지원서(적·부) - 자기소개서(100점)	5배수 이내	- 응시자격 적격자 중 자기소개서 평가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함
면접	(1차) PT 면접(40점) (2차) 직무 면접(60점)	3배수 이내	1차, 2차 면접 합산 결과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①~④ 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순) ③ 지역인재(이전지역, 비수도권 순) ④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임용적격여부 조회	- 비위면직자, 결격사유 조회 - 채용신체검사	적·부	적격자
최종합격자 결정	-	1배수	면접 합격자 중 임용적격여부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참여 포기자 발생 시 서류전형(자기소개서) 고득점자 순 최대 5순위까지 예비합격자를 선정
- * (임용 차순위자)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 차순위자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구분	내용
면접전형	PT 면접 PT 기반의 주요 업무 실적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
	직무 면접 경험·상황 기반의 직무 면접

6

가점 및 우대사항

□ 서류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 평 적 인 력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만점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한함	
	이전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이며 졸업(예정)인 자	
자 격 증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만점의 2%
		IT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점의 3%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만점의 1%
	직무	축산기사	만점의 3%
		축산산업기사	만점의 1%

□ 면접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 평 적 인 력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현재 무직)	만점의 3%

〈가점 부여 상세 기준〉

1.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은 대상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함
3. 이전지역 지역인재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상세 내용은 [붙임3] 참고
4. IT 및 직무 자격 가점은 각각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하며, 자격사항 가점 총점은 만점의 10%
5. 직무경험 가점은 항목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6.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의 경우 채용공고상의 근무기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사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우대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우 대	①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동점자 우대 (순서 : ①~④)
	②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순)	
	③ 지역 인재	이전지역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이며 졸업(예정)인 자	
		비수도권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지방(비수도권) 대학이며 졸업(예정)·중퇴·제적·재학·휴학한 자	
	④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7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접수	(공고) 6. 4.(수) ~ 6. 23.(월) 18시까지 (접수) 6. 4.(수) ~ 6. 23.(월) 18시까지	-
서류 합격자 발표	7. 1.(화)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증빙서류 제출	7. 1.(화) ~ 7. 3.(목) 18시까지	• 채용홈페이지 업로드
면접 대상자 발표 및 면접자료 제출	(면접 대상자 발표) 7. 9.(수) (자료 제출) 7. 14.(월) 18시까지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면접전형	7. 16.(수)	• 면접장소 : 별도공지
면접 합격자 발표	7. 23.(수)	
신체검사 및 기초서류제출	7. 23.(수) ~ 7. 28.(월) 18시까지	• 신체검사는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하며 서류는 채용홈페이지 업로드
최종 합격자 발표	8. 1.(목)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임용	8. 18.(월)	• 경력자의 경우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홈페이지(<https://ekape.careerlink.kr>) 조회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과 장소 및 채용방식은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안내

전형단계	대상	제출서류	제출대상 및 용도	비고
서류전형	공통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류심사용	• 온라인 접수 ※ 채용홈페이지 활용
증빙 서류제출	필수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 응시자격 확인	• 서류제출 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 직무경험 가점 대상자는 기관 내 데이터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해당자	• 최종학력증명서	• 응시자격 확인	
		• 취업지원대상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 증증은 증증장애인확인서 함께 제출	• 장애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저소득층 대상자	
		•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경력단절여성 대상자	
		• 이전지역 소재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이전지역 인재 우대사항 입력자	
		• 비수도권 소재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예정)증퇴·제적·재학·휴학 증명서)	• 비수도권 인재 우대사항 입력자	
면접자료 제출	공통	• 직무수행계획서[붙임8] ※ 3매 이내	• 면접심사용	• 온라인 접수 ※ PDF 형식으로 제출
		• PT 면접 자료 ※ 주요 업무 실적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		
결격사유 조회	군경력자	•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확인	•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
	공통	• 주민등록등본	• 비위면직자 조회	
		• 기본증명서(상세)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결격사유 확인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25. 6. 4.)** 발급분만 인정. 단, 발급일이 무관한 서류는 제외

※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 및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제출서류 내 원본 확인 번호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 확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예: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 평가위원 미제공

〈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24.5월) 〉

○ **제출서류 요구** : 지원자의 증빙자료는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한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1.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당 증명서는 반드시 정부 24(www.gov.kr)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2. 증증장애인은 증증장애인 확인서를 제출
 - * (방문발급)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 * (온라인발급) 장애인직업능력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
3.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이 공고일(포함) 기준 3개월 이전이어야 함

9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시

※ 입사지원서에 성별,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 연령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에 성명, 성별,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 연령, 기관명 (우리원 포함)·업체명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사항 〉

○ 블라인드 위반

- 개인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의 편견요소] 확인

항목	위반 예시
성명	성명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 (예시) 동아리 살림꾼 ‘홍길동’
성별	성별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결혼 후 남편과 함께 / 00여대를 졸업하고 / 여성과학기술인 사업을 지원받으며 / 동아리 활동 중 친한 형(누나, 언니)에게 / 장남으로 태어나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군대 경력	군대 경력으로 성별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군대 의무 복무 시절, 00병 경험을 통해 / 군수병·전경·행정병·조리병으로 복무하며
출신 지역	지원자 본인 또는 가족의 출신지가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우리나라 수도에서 태어나 / 대구에서 태어나 /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출신 학교	출신 학교가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00대학교 장학금 수상 / 00대학교 회장 / 00대학교 조교 / 00대학교 LINC 사업단 / 00대학교 학생연구원 / 재학시절 00대 총장상을 수상 / ‘SNU 발표와 토론’ 수업을 수강
가족관계 (학력·직업·재산)	가족관계가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 축평원에서 일하는 친언니를 보며
연령	연령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88년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태어나 / 2019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관명 및 업체명	출신 기관명 및 업체명이 유추 또는 확인이 되는 경우 (예시) 축평원에서 인턴을 하며 / 농식품부에서 3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며

※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여 기재(00대학교에서 기계 관련 전공을 통하여 / 00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

※ 현 주소 및 메일 주소 작성 시 학교명 및 직장명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불성실 기재

- 의미없는 문자의 나열, 동일 내용 문구 반복, 기관 명칭 오기입(타 기관 지원), 평가항목 중 공란 또는 작성 분량의 50자 미만 작성 확인

〈 블라인드 위반사항 확인 결과 및 처리 방안 〉

기재 위치	구분	확인 결과	처리 방안
입사지원서	성별	‘블라인드 위반’	부적격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학력·직업·재산)		
	연령		
자기소개서	성명	‘블라인드 위반’	해당 단어당 5점 감점
	성별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학력·직업·재산)		
	연령		
	기관명(우리원 포함) 및 업체명		

10 채용비리 구제방법 및 이의신청 안내

□ 피해자 구제방법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 순번 부여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 이의신청

전형구분	합격자 발표일	이의신청 기간
서류	7. 1.(화)	7. 1.(화) ~ 7. 4(금)
면접	7. 23.(수)	7. 23.(수) ~ 8. 8.(금)
최종	8. 1.(금)	8. 1.(금) ~ 8. 17.(일)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이의신청메뉴에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후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1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11]를 작성하여 메일(recruit@ekape.or.kr)로 신청

*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 접수 시 14일 이내 송부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12

기타

-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기재 착오, 기재 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마감 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 제출을 바람(접수마감시간 연장 없음)
-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함
-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분야 채용에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 지원 사실 확인 시 탈락처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사규정」제22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22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전형 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208)로 문의

[붙임1] 직무기술서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서 - 고객소통처장

채용분야		고객소통처장(홍보·언론·고객관리)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경영·회계·사무	01. 기획사무	02. 홍보·광고	01. PR
			02. 광고
		03. 마케팅	02. 고객관리
기관 주요사업	○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유통사업, 연구·조사, 정보화, 축산(물) 생산 컨설팅 및 지도교육·홍보, 국제협력,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등 기타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과 부대사업		
직무수행내용	○ (홍보기획) PR 환경분석을 통해 조직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와 위기대응을 위한 홍보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홍보활동을 평가·환류 ○ (온·오프라인 홍보)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PR 활동, 효과 측정과 피드백 등을 수행 ○ (언론 홍보) 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조정 및 언론위기 관리 ○ (광고)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광고 전략 및 매체 선정 등 ○ (고객관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관리 계획을 수립·관리하며, 그 성과를 평가해 기관 고객관리 업무에 환류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발표·대면)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		
응시요건	○ 공고문 참고		
필요지식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방법 실무지식 숙지 및 전략적 선택 능력 보유 ○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경영학적 분석기법(PEST, SWOT 등) ○ 홍보매체 변화 트렌드 ○ 광고 심의기준 및 관련 법령 ○ 언론의 종류별 특성과 언론사의 구조, 기자의 유형		
필요기술	○ 홍보유관부서 운영·관리 역량 ○ 인터뷰 기법 등 다양한 홍보방법 실무지식 숙지 및 전략적 선택 역량 ○ 언론 홍보 기획력 및 보도자료 검토 및 전문적 보고서 작성·검토 역량 ○ 트렌드 파악 및 자료분석 능력 ○ 컨셉트와 메시지 개발의 창의성 ○ 상황별 유연하고 적극적인 관계구축 및 언론 위험관리 커뮤니케이션 역량 ○ 계획 정보 수집을 위한 각 관리 영역별 전문가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직무수행태도	○ 기획 마인드 ○ 홍보방법 개발의 창의성 ○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하는 태도 ○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 ○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 ○ 대내·외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태도 ○ 홍보 트렌드 및 기관 관련 정보와 이슈에 대해 상시·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태도		
참고사이트	○ www.ncs.go.kr → NCS.학습모듈검색		

[붙임2]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직원채용 업무지침」 제13조(신체검사) ① 원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 중 색각이상자는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
- ③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징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3.>

[붙임3] 우대사항

1.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로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6.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

※ 아래 참고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정의 〉

-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 (이전지역 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비수도권 지방학교〉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본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 예 시 〉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이전 지역 학교〉

가. 이전지역 학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3)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

- (1)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2)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다.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2)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분교(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와 이원화캠퍼스(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구분 필수

구분	비수도권 가점 해당	이전지역 가점 해당
분교	○	○
이원화	X	○

-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검색 결과 본분교 기준이 '분교'인 경우에만 분교로 인정

7.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붙임4] 정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기준

1. 정부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2.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347개 공공기관(24. 1. 30.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 부설기관 제외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4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40)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훈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40)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붙임5] 입사지원서 ※ 채용분야별 편집하여 입사지원 페이지 구성 예정

입사지원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사항은 증명 가능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주십시오.

지원분야		지원구분	신입() 경력()
성명	(한글)	비상연락처	
현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우대사항	☐ 장애대상 ☐ 보훈대상 ☐ 지역인재 ☐ 경력단절 여성 ☐ 청년 ☐ 장년		

※ 축산물품질평가직은 축산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전문대 이상」「축산관련 전공」선택항목 추가

2. 교육 사항

(1) 학교교육

* 학교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과 목 명	주 요 내 용

(2) 직업교육

* 직업교육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 ,]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과 정 명	주 요 내 용

3. 자격 사항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국가공인 기술/전문/민간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그 외 모든 경력사항은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5. 직무관련 기타 활동

* 직무관련 기타 활동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활동기간	소속조직	주요역할	활동 주요내용

[붙임6] 자기소개서 ※ 채용분야별 편집하여 입사지원 페이지 구성 예정

자 기 소 개 서

1. 고객소통 또는 유관 분야(예: 홍보, 대외협력, 정책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귀하가 보유한 전문지식과 그를 바탕으로 수행한 주요 업무 또는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해당 경험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고객소통처장 업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700자 내외)

2. 조직의 리더 또는 팀장으로서 조직 운영, 인사·재무 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성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700자 내외)

3. 과거 업무 수행 중 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특히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700자 내외)

4. 귀하의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업무 계획, 기대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700자 내외)

[붙임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채용절차 진행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해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경력, 이수한 교과과정,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채용절차 진행 및 채용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 결정일로부터 90일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내부 인사관리를 위해 준영구보유)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보훈 및 장애 관련 정보	채용절차 진행 및 채용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 결정일로부터 90일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내부 인사관리를 위해 준영구보유)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증명서 생성(발급)기관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진위여부 확인 소요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채용절차 진행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붙임8] 직무수행계획서

직 무 수 행 계 획 서

구 분	내 용
응시분야	개방형 직위(3급)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3page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신명 신명조 13pt, 줄간격 160%, 문단위 10pt, 문단아래 0pt로 작성, 장평/자간은 최소화)

[붙임9] 서류전형 심사표

서류전형 심사표

해당직위		성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점	비고
전문적 지식 및 경험	30점		
조직 운영·관리 능력 및 경험	30점		
행정업무 수행능력 및 경험	20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추진사업 이해정도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타당성	20점		
계①	100점		
우대사항(가점)②			
감점사항③			
총 점(①+②-③)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 평가점수 기준표

등 급	배점(30점)	배점(20점)
탁 월	27 ~ 30	18 ~ 20
우 수	24 ~ 26	16 ~ 17
보 통	21 ~ 23	14 ~ 15
미 흡	18 ~ 20	12 ~ 13
불 량	18점 미만	12점 미만

[붙임10] 면접전형 심사표

면접전형 심사표

수험번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구 분	주요 관찰 사항		평정 점수
용모·품행 및 성실성	○ 복장(머리, 옷매무새 등)은 단정한가? ○ 응답 자세, 시선, 예의범절은 바른가? ○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 상호존중과 배려에 관한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5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침착성과 적극성을 겸비하고 있는가? ○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15점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의사 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가? ○ 질문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가? ○ 주관이 뚜렷한가?		/ 15점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 지원 분야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일반교양 및 상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5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 가치관이 우리 기관의 업무와 일치하는가? ○ 우리 기관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협동심과 사회성이 좋은가?		/ 20점
인성 및 적성	○ 인성 및 적성의 적절성은?		/ 20점
우대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기타 가점		
감점	감점된 사항 기술		
평가점수 합계			

※ 평가점수 기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20점)	18점 이상	16~17점	14~15점	12~13점	12점 미만
배점(15점)	14점 이상	12~13점	10~11점	9점	9점 미만

[붙임11]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